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 지원 관련 법률안

검 토 보 고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 지원〉

-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436호)
-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944호)
-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승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3064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연 광 석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9
1. 총괄적 검토	9
가. 제정안의 구성 체계	9
나. 제정안의 취지 및 지원대상에 대한 주요 내용	11
2. 조문별 검토	25
가. 목적 등	25
나. 정의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27
다.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38
라. 실태조사	44
마. 정책심의위원회	46
바. 구체적 지원 정책	49
사. 지원센터 설치·운영	57
아. 지원센터에의 연계	61
자.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63
차. 전담공무원	65
카. 비밀유지 의무 및 유사명칭 사용금지, 벌칙 등	69

I. 개요

1.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의안번호 제243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서영석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7. 31.
- (3) 회 부 일 : 2024. 8. 1.

나. 제안이유

현재 다른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청년에게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들 중 고령·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학업, 취업, 근로활동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해서는 지원규정이 없고 구체적인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아동·청소년·청년기의 돌봄역할 수행은 현재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가족돌봄서비스 지원, 상담·교육 지원, 취업·자립 지원 등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가족돌봄아동

· 청소년·청년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차별 없이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돌봄대상가족”이란 고령, 장애, 질병, 정신질환 또는 약물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말하고,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이란 돌봄대상가족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3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본인 및 돌봄대상가족의 소득·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사람을 말함(안 제3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하여 가족돌봄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게 가족돌봄서비스,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 건강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하여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2.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944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성원의원 등 16인

(2) 제 안 일 : 2024. 8. 19.

(3) 회 부 일 : 2024. 8. 20.

나. 제안이유

2022년 기준 청년 고용률은 46.6%에 그치고,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이 약 5%에 달함. 이러한 청년의 사회적 취약성은 청년의 자립이 어려움을 보여줌.

그런데 현재 사회적으로 취약한 청년에 대한 지원은 각 부처에 산재되어 진행되고 있음. 이에 대해 사회적으로 취약한 청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법률에서 통합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적으로 취약한 청년에 대한 자립지원과 보호를 통해 그 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자립지원과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취약청년의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안 제1조).
-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 다. 취약청년의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위원회를 둠(안 제8조).
- 라. 취약청년을 대상으로 자립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청년자립준비학교를 설치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사회적 가족제도를 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마. 취약청년 자립준비 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18조).

3.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3064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조승환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4. 8. 22.

(3) 회 부 일 : 2024. 8. 23.

나. 제안이유

현재 고령·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일상 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학업, 취업, 근로 활동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학업 수행이나 사회 적응이 곤란한 청년에 대해서도 사회에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가족돌봄 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위기청년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위기청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위기청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가족돌봄서

비스 지원, 상담·교육 지원, 취업·자립 지원 등 위기청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위기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위기청년”을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으로 정의하고, “가족돌봄청년”을 고령, 장애, 질병, 정신질환 또는 약물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과 거주하며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청년으로서 본인 및 돌봄대상가족의 소득·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사람으로, “고립·은둔청년”을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스스로 회피하거나 제한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학업 수행이나 사회 활동이 곤란한 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위기청년 지원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위기청년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위기청년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하여 가족돌봄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위기청년에게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 건강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기청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II. 검토의견

1. 총괄적 검토

가. 제정안의 구성체계

□ 제정안들은 청년 계층 중에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집단을 특화하여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으며, 그 지원 대상은 서영석의원안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조승환의원안은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김성원의원안은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포함하는 8개 유형의 취약청년으로서 차이가 있음.

< 서영석, 조승환, 김성원의원별 의안명과 지원대상 비교 >

	서영석의원안	조승환의원안	김성원의원안
법률명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지원 대상 및 연령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34세 이하)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19~34세)	○8개 유형 취약청년 ¹⁾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포함) (19~34세)

1)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성원의원안, 제2944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취약청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그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부채 등 재산상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청년

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년 및 부모 모두 외국인인 가정의 청년. 이 경우 청년의 출생지를 불문한다.

다. 부, 모 또는 본인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청년

라. 고령,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는 청년

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인 청년

- 김성원의원안에서의 지원대상 8개 유형의 취약청년 중 6개 유형의 취약청년은 「장애인복지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의하고 지원하고 있으나,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은 다른 법률에서 지원 규정이 없어 독자적인 측면이 있음.
- 제정안들의 조문별 구성체계를 보면, 서영석의원안은 지원대상자가 발견될 때 지원센터로의 연계가 의무화되는 기관을 열거하고 있고, 조승환의원안은 다른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보호하지 않는 고립은둔청년까지를 위기청년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김성원의원안은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등의 특색을 갖추고 있는 점에서 제정안별로 차별화되고 있음.

< 제정안의 조문별 구성체계 >

(괄 호는 조문을 의미)

서영석의원안	조승환의원안	김성원의원안	주요 내용
목적(1), 기본이념(2)	목적(1)	목적(1)	○제정안의 목적
정의(3)	정의(2)	정의(2)	○제정안의 핵심 용어에 대한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포괄적 선언
다른 법률과의 관계(5)	다른 법률과의 관계(4)	다른 법률과의 관계(4)	○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6, 7)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5, 6)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5, 6)	○기본계획 주기: 5년 ○시행계획 주기: 매년
실태조사(8)	실태조사(7)	실태조사(7)	○실태조사 주기: 3년

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제4호·제5호의 시설에서 퇴소한 청년

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년

아.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서 6개월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학업수행이나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서영석의원안	조승환의원안	김성원의원안	주요 내용
정책심의위원회(9)	정책심의위원회(8)	정책심의위원회(8)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정책 심의위원회
구체적 지원 정책 (10~18)	구체적 지원 정책(9 ~16)	구체적 지원 정책 (9, 11~13)	○수당, 돌봄서비스, 상담지 원 등 구체적 지원 내용
지원 센터 설치·운영(19)	지원 센터 설치·운영(17)	청년자립지원 준비학교 설치·운영(10)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 한 기관 설치·운영
지원센터 연계(20)	-	-	○지원대상자 발견 시 지원 센터 연계 의무 기관 명시
-	-	단체 등에 대한 지원(14), 박람회 개최(18)	○국가와 지자체의 그밖에 지원 내용
-	-	정보시스템 구축(16)	○효율적 운영을 위한 통합 지원정보시스템 구축
전담공무원(21) 및 전문성 교육(22)	전담공무원(18, 19)	전담 인력 배치(17)	○지원업무를 담당할 공무원 명시
비밀유지 의무(23)	비밀유지 의무(20)	비밀유지 의무(20)	○직무 관련 비밀 누설 금지
협력체계 구축(24)	협력체계 구축(21)	협력체계 구축(15)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관 련 기관과 단체 협력
권한의 위임과 위탁(25)	권한의 위임과 위탁(22)	권한의 위임과 위탁(19)	○권한과 업무 위임, 위탁 근 거 마련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26)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23)	-	○지원센터 유사명칭 사용 금지
벌칙(27), 과태료(28)	벌칙(24), 과태료(25)	벌칙(21)	○직무상 비밀 누설은 벌칙, 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반 은 과태료로 규율

나. 제정안의 취지 및 지원 대상에 대한 주요 내용

(1) 제정안의 취지 및 지원 대상

□ 제정안들이 지원하려는 대상 집단에 대하여 지원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먼저 가족돌봄청년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각 제정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가족돌봄청년²⁾을 정의하는 방식은 차이가 있으나, 본인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장애나 질병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돌봄을 전담하고 있는 청소년³⁾ 및 청년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서영석, 조승환, 김성원의원안에서의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정의 >

	서영석의원안	조승환의원안	김성원의원안
지원 대상에 대한 정의	○ “ <u>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u> ”이란 돌봄대상가족 ⁵⁾ 에게 <u>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u> 을 제공하고 있는 3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본인 및 돌봄대상가족의 <u>소득·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사람</u>	○ “ <u>가족돌봄청년</u> ”이란 돌봄대상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u>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u> 을 제공하고 있는 청년으로서 본인 및 돌봄대상가족의 <u>소득·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사람</u>	○ <u>고령,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u>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u>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u> 을 제공하는 청년

□ 가족돌봄청년이 우리나라에서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돌봄대상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지 여부, 지원대상으로서 돌봄대상가족 및

2) 검토보고의 전개 상 서영석의원안에서의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조승환의원안에서의 가족돌봄청년, 김성원의원안에서의 가족돌봄에 대한 정의조항

3)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4) 「청년 기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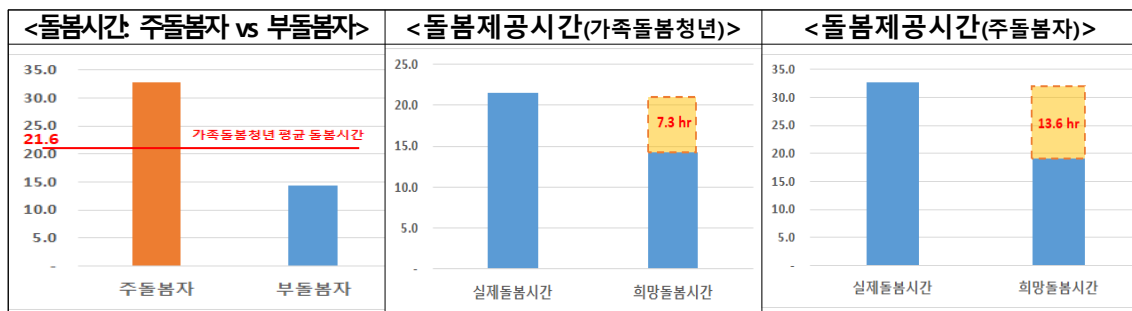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5) 서영석의원안의 정의에 따르면, “돌봄대상가족”이란 고령, 장애, 질병, 정신질환 또는 약물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8촌 이내의 혈족을 말한다)임.

소득과 재산의 기준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보건복지부가 2022년 전국 중·고등학생 및 만 13~3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 가족돌봄청년⁶⁾ 실태조사⁷⁾에 따르면, 응답자 총 43,832명 중 ‘가족을 돌보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810명으로 파악되었고, 이 집단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음.

- (돌봄시간) 주당 평균 돌봄 시간은 21.6시간(주돌봄자⁸⁾*는 32.8시간)이며, 39%가 주당 15시간 이상 장시간 돌봄.

- (돌봄시간 격차) 주당 평균 돌봄 시간 21.6시간은 희망 돌봄 시간인 14.3시간에 비해 7.3시간 더 긴 시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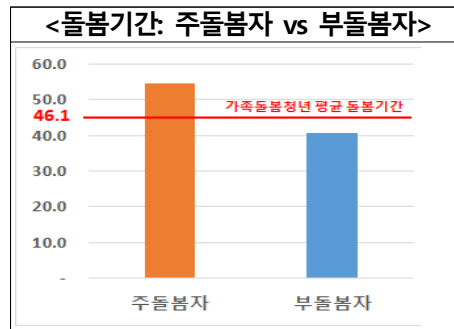
* 자료: 보건복지부

- (돌봄기간) 평균 돌봄 기간은 46.1개월(주돌봄자 54.7개월)이며, 절반 이상이 24개월 이상 장기간 돌봄.

6) 이 설문조사에서 ‘가족돌봄청년’은 중증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3~34세(「청년기본법」에서의 청년은 1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음)의 사람을 가리킴.

7) 2022년 4~5월 설문조사 형태에서 43,8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 가족돌봄청년으로 확인되어 같은 해 7~9월 심층조사에 응한 인원이 총 810명임.

8) 돌봄대상 가족을 돌봄 35~64세 연령대의 다른 가구 구성원이 없는 경우



* 자료: 보건복지부

- (돌봄 대상·상태) 돌봄 대상 가족은 할머니, 형제자매, 어머니 순으로 많았으며, 대상자 상태는 중증질환, 장애인, 정신질환 순으로 많았음.

< 돌봄 대상자 가족 유형 >

(단위: %)

구분	할머니	형제·자매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기타 친척
전체	39.1	25.5	24.3	22.0	22.0	21.7

※ 복수 응답 가능

< 돌봄 대상자 건강상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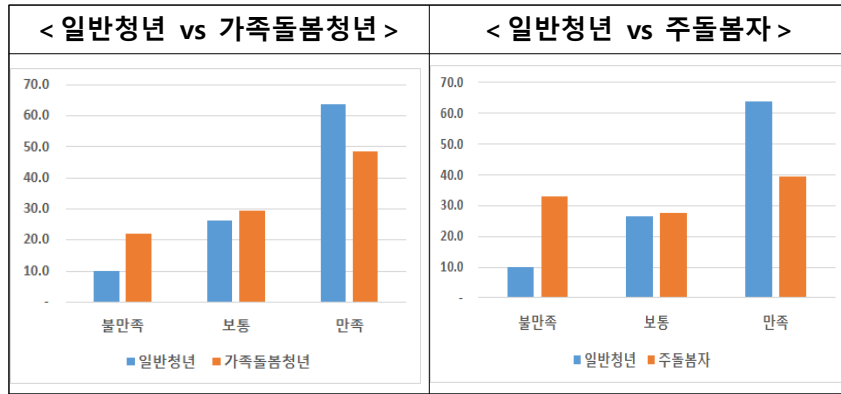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중증질환	장애인	정신질환	장기요양 인정 등급	치매	기타
전체	39.1	25.5	24.3	22.0	21.7	45.6
주돌봄 자	37.3	31.7	35.4	27.3	15.7	29.2

※ 복수 응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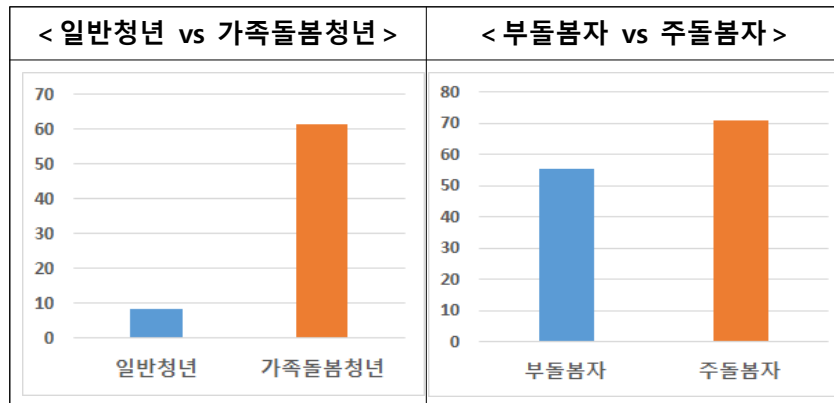
* 자료: 보건복지부

- (삶의 만족도) 삶에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약 22%로 일반청년(약 10%)의 2배 이상이며, 주돌봄자의 경우 일반청년의 3배 이상(약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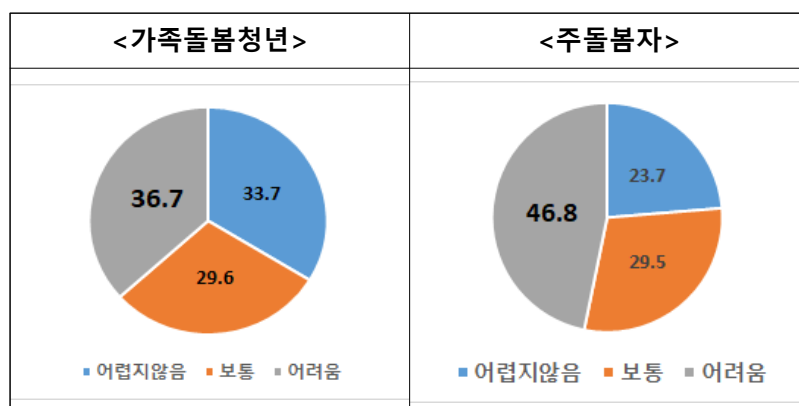
* 자료: 보건복지부

- (우울감 유병률) 우울감 유병률은 약 61%로 일반청년(약 8%)의 7배 이상이며, 주돌봄자의 경우 일반청년의 8배 이상(약 71%)



* 자료: 보건복지부

- (미래계획 곤란) 미래계획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37%이며, 주돌봄자의 경우 더 높게 나타남.



* 자료: 보건복지부

□ 국회입법조사처의 관련 연구자료⁹⁾를 보면, 국가별로 청소년 인구의 약 5~8%가 가족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를 우리나라 11~18세 청소년 인구수 368만 4,531명에만 단순 대입하더라도 약 18만 4천명~29만 5천명의 가족돌봄청소년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¹⁰⁾, 상당한 규모의 가족돌봄청년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아동·청소년·청년기에 시작된 돌봄의 부담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이어지고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각종 복지서비스 신청의 절차적 어려움과 간병·치료 등에 대한 정보 부재 등으로 인해 도움을 받지 못하여 정신적으로 고립되고 생계비·의료비·돌봄비용의 부족 등 극심한 생계 부담을 떠안게 되어, 결과적으로 학업과 진로 탐색의 기회 또한 절대적으로 줄어들어 그 생애가 취약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됨.

참고로, 2021년 20대 청년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병원비 부담으로 집에서 홀로 돌보다 생활고와 간병의 어려움을 감당하지 못하고 의도적으로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사례¹¹⁾도 있었음.

□ 한편, 현행 법령에 따라 가족돌봄청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복

9)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 최근 1년 이내 재단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아동 중, 양육시설거주 아동을 제외한 만 7세~만24세 아동·청소년 총 1,494명을 대상으로 가족돌봄여부, 돌봄대상 등을 조사한 결과, 46%에 해당하는 686명이 가족돌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바 있음.

10) 허민숙, “해외 영 케어러(young carer) 지원 제도와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22. 2. 22.

11) “생활고에 치료비 없어 중병 아버지 방치...’간병 살인’ 20대 가석방 된다” (세계일보, 2024.7.25.,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725511477?OutUrl=naver>)의 내용임.

지서비스는 존재하나,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년기본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개별 법령 등에 단편적으로 산재하여 있는 상황임.

□ 그러나 이러한 지원마저도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가족돌봄청년 중 24세 이하인 청소년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위기 청소년’¹²⁾에 포함되어 복지지원, 교육지원 등을 제공받을 수 있고, 특히 청소년 특별지원을 통해 가족돌봄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지원이 가능함. 그러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청소년 특별지원제도를 보면, 동 제도는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원기간이 1년(필요시 1년 연장 가능)에 불과¹³⁾하여 청소년이 충분히 자립하기 전까

1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1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특별지원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다만,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7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내용 등**) ① 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은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

1. 청소년이 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지원
2.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비용의 지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의 지원

4. 취업을 위한 지식·기술·기능 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비의 지원

지 지속적인 지원은 어려운 것으로 보임.

<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종류 및 내용 >

지원종류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생활지원	①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② 숙식 제공	월 50만원 이내
건강지원	① 진찰·검사 ③ 처치·수술, 기타 치료 ⑤ 입원, 간호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④ 예방·재활 ⑥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연 200만원 내외
학업지원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 교과서대금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월 15만원 (수업료) 월 30만원 이내 (검정고시)
자립지원	①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월 36만원 이내
상담지원	①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② 프로그램 참가비	월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년 25만원) 별도
법률지원	① 소송비용 ② 법률상담비용	연 350만원 이내
청소년 활동지원	① 수련활동비 ② 문화활동비 ③ 교류활동비 등	월 10만원 이내
기타 지원	①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 교복 지원 등	

* 자료: 보건복지부

□ 이에 따라 가족돌봄청년이 돌봄 및 생계부담을 안고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음에도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어 현재의 보호체계 내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가족돌봄청년의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안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향후

5. 폭력이나 학대 등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의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해당하며, 지원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금액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그 지원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은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미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하여 유사한 취지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다수¹⁴⁾의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와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제정안의 취지와 유사한 법률과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인 해외사례로 영국, 호주, 일본을 들 수 있음.

<가족돌봄청년 지원 종류 및 내용>

내용	영국	호주	일본
정의	장애, 신체·정신질환, 약물 등 문제를 가진 가족·친척을 돌보는 18세 이하의 사람	장애, 신체·정신질환, 약물 등 문제의 가족·친척·지인을 돌보는 25세 이하의 사람	고령, 신체·정신상의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친족·친구·지인에게 무상으로 간병 등을 제공하는 18세 미만의 사람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 영케어러 정의·권리·지원·발굴 방안 등	「케어러 인정법」 - 영케어러 권리·지원 방안 등 규정	「케어러 지원 조례」(사이타마현) - 가족 돌봄 청년 정의·권리·지원 방안 등
돌봄 필요 가족 요건	각종 복지급여* 중 1개 이상 수령 가족·친지 * 장애인 개인자립수당, 장애생활수당, 장애노인보호수당, 상이군인자립수당, 일상간호지원 및 산업재해장애급여 등	신청 과정상 돌봄 대상자 요건 없으나, 선정 절차에서 가중치* 부여 * 돌봄대상자의 장애정도, 돌봄부담, 돌봄기간, 가구소득, 주 돌봄자, 장애유무, 한부모 가정 등	-
가족 돌봄 청년 수당	영 케어러 보조금 - 308.15파운드 (약 48만원 일시불) - 사용처 제한 없음	영 케어러 학비보조금 - 고등학교 이상 과정 수학하며, 다른 장학금 받지않는 영 케어러 - 3,000 호주달러	-

* 자료: 보건복지부

14) 2024년 9월 기준 약 80여 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 가족돌봄청(소)년 지원 조례를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다음으로 고립·은둔청년에 대하여 살펴보면, 각 제정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고립·은둔청년을 정의하는 방식은 차이가 있으나, 인구구조상 사회에 첫발을 내딛거나 그 준비에 집중해야 할 젊은 연령임에도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그러하지 못한 채 공동체의 일원으로 등장하지 못하는 세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서영석, 조승환, 김성원의원안에서의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정의 >

	서영석의원안	조승환의원안	김성원의원안
지원 대상에 대한 정의	○ 해당 없음	○ “ <u>고립·은둔청년</u> ”이란 <u>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스스로 회피하거나 제한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학업 수행이나 사회 활동이 곤란한 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u>	○ <u>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서 6개월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학업 수행이나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u>

□ 고립·은둔청년에 대하여도 보건복지부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2023년 12월에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최종 응답자가 약 9천명으로서 표본 규모가 크고, 지역별 인구 규모에 비례하여 응답자가 골고루 분포하여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

는바, 링크 접속 기준 56,183명이 참가하여 2차 심층조사 최종응답
까지는 8,867명이 참여하였음.

<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 실시 개요 >

▶ 1차 조사 : (링크 접속) 56,183명 → (조사참여자) 33,570명 → (응답완료자) 21,360명 → (1차 위험군 식별) 12,105명(응답완료자 중 56.7%, 객관적 위험)
▶ 2차 심층조사 : 12,105명 대상 8,867명 최종응답(이 중 1,903명 개인정보 동의)

* 자료: 보건복지부

< 최종응답자의 지역 분포 현황 >

구분	유효표본(명)			비율(%)			2023년 인구추계 구성비
	은둔	고립	전체	은둔	고립	전체	
서울	1,288	958	2,246	25.0	25.8	25.3	(21.1)
부산	366	248	614	7.1	6.7	6.9	(6.0)
대구	227	162	389	4.4	4.4	4.4	(4.3)
인천	412	297	709	8.0	8.0	8.0	(5.9)
광주	177	98	275	3.4	2.6	3.1	(2.9)
대전	174	151	325	3.4	4.1	3.7	(3.1)
울산	103	69	172	2.0	1.9	1.9	(2.0)
세종	29	33	62	0.6	0.9	0.7	(0.8)
경기	1,182	837	2,019	22.9	22.6	22.8	(27.8)
강원	143	133	276	2.8	3.6	3.1	(2.5)
충북	117	89	206	2.3	2.4	2.3	(3.1)
충남	182	111	293	3.5	3.0	3.3	(4.0)
전북	147	91	238	2.9	2.5	2.7	(3.0)
전남	143	107	250	2.8	2.9	2.8	(2.6)
경북	155	92	247	3.0	2.5	2.8	(4.2)
경남	257	175	432	5.0	4.7	4.9	(5.4)
제주	54	60	114	1.1	1.6	1.3	(1.2)
전체	5,156	3,711	8,867	100.0	100.0	100.0	(100.0)

* 자료: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 결과 분석에 따르면, 고립·은둔 주요 이유

는 취업실패, 대인관계, 가족관계, 건강 문제 등이 주를 이루었으나 폭력이나 괴롭힘 및 다른 일 몰두 등의 사유도 적지 않았으며, 응답자들의 특성으로서 자신들이 심리상태가 좋지 않고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다는 것을 들 수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태를 벗어나길 원한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80% 이상이었음.

< 고립·은둔 주요 이유 >

(단위: %)

구분	취업실패	대인관계	가족관계	건강 문제	기타
전체	24.1	23.5	12.4	12.4	27.6

※ 복수 응답 가능

* 자료: 보건복지부

< 실태조사 결과 그밖의 주요 내용 >

- (초고위험군) ‘방’에서도 만나온다 응답 504명
- (응답자 특성) 심리상태 안 좋음, 도움이 필요하나 요청할 곳 없음
 - (사회적 관계의 양) 일반청년 대비 현저히 적음
 - * 지난 2주간 가족·친척과 접촉: 1~2번 이내 45% 이상 (일반의 경우 10% 이내)
 - * 지난 2주간 친구·지인과 접촉: 1~2번 이내 50% 이상 (일반의 경우 6% 이내)
 - (삶의 만족도, 정신건강) 매우 낮은 상황(3.7점, 청년 평균 6.7점)
 - * 자살생각 한 적 있다 응답(8,436명 중 약 6,300명 / 75.4%), 청년 평균 2.3%
 - (온라인 활동 의존) 돈을 덜 들이면서 시간 소요 가능
 - * 주로 하는 활동: OTT 등 동영상 시청(23.2%), 온라인 활동(15.6%)
 - (고립·은둔 이유) 취업실패(24.1%), 대인(23.5%), 가족(12.4%), 건강(12.4%)
 - (회복 의지) **80% 이상이 현재 상태 벗어나길 원한다고 응답**
 - * 응답자 67.7%는 민간기관 문의 등 탈고립 실제시도 경험 ↔ 반면, 도움받은 경험없음 응답자 56% (① 정보부재 28.5%, ② 비용부담 11.9%, ③ 지원기관 없음 10.5%)
 - (경제수준) 중·하층 多, 다만, 가족 중상이나 본인은 하층 경우도 多
 - (문제인식) 외부도움이 필요한 문제로 본인·가족이 인식 59.1%
 - * 아버지 형제자매와 관계가 안좋다(매우 안좋다 포함) 응답 각각 20.2%, 15.0%

* 자료: 보건복지부

(2) 관계 부처 및 기관 의견 등

□ 보건복지부는 좌절감에 빠져 고립¹⁵⁾ 또는 은둔¹⁶⁾ 상황에 처한 청년들이 처음부터 취업 연계 사업을 지원받기에는 정서적·심리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많으므로 일상생활의 회복이 우선이라 판단하고, 정시 기상, 식사 제때 챙기기, 타인과의 소통 등도 어려운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단 일상생활을 회복시키고, 가족 및 친구 등 심리적 지지 안전망을 만들며, 그 다음 타인과의 소통기술, 타인과 같이 생활하는 법, 타인과 일하는 법의 기초수준을 높이는 데에서부터 사업을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별도의 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더라도, 목적·기능이 중복되는 대상자별 심의위원회 또는 지원센터·전담공무원의 운영은 국가 및 지자체에 재정부담을 가저올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재정소요가 필요한 직접 지원 조항들에 관하여 제정안에서는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하여는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임.

15) 보건복지부의 자체 기준으로 ‘고립’은 사회활동이 거의 없어 취약한 상태이지만, 외부 외출이 다소간 있으며 긴급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인적 지지체계가 부재한 상태임.

16) 보건복지부의 자체 기준으로 ‘은둔’은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외부 외출이 없이 방 또는 집 등 제한된 거주공간에 스스로를 가둔 상태임.

< 제정안에 대한 관계 부처 및 기관 의견 >

부처명	제정안에 대한 의견
국무조정실	○ 별도의 기본계획 및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기보다는 위기청년에 대한 정책이 시작 단계인 점을 고려하여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한 후 필요성을 검토하는 편이 바람직할 것임. ○ 장애인·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 등은 이미 복지전달체계가 확립되어 운영중이므로 제정안에 따른 체계와 기존 체계의 역할을 정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지양하고, 하나의 위원회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족돌봄아동 및 고립·은둔청년 정책에 관한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신설하기보다는 보건복지부 정책자문위원회 산하의 분과·전문위원회 형태로 활용하는 방안 고려 필요
사회복지법인 초록우산	○ 가족돌봄청년의 경우,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범위를 제정안보다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 주거시설 지원 관련하여 신설보다는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자격부여 및 임대보증금 지원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제안함.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 제정안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는 정책적 연속성, 행정의 효율성, 대상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 차원에서 관련 현행법들의 개정이 더 실효적일 것으로 보이며, 가족돌봄청년의 정의 관련하여서는 소득기준 및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의 동거 기준은 삭제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책심의위원회에는 위기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지원대상을 정의함에 있어서는 「청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2. 조문별 검토

가. 목적 등

- 각 제정안 제1조에서는 제정안이 지원하려는 집단을 각각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취약청년으로 하고 이들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밝히고 있으며, 서영석의원안은 제2조에서 기본 이념을 추가하고 있음.

서영석의원안	조승환의원안	김성원의원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u>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차별 없이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u>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u>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에 이바지함</u>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u>취약청년</u> 의 자립을 위한 기반조성과 취약청년에 대한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이 <u>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u>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이념) ① 모든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에 대하		

서영석의원안	조승환의원안	김성원의원안
여 자신의 견해를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와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③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조승환의원안은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보장이라는 목적을 구체화하고 있어 법안이 지향하는 바를 보다 명확히 하는 효과가 있음.

□ 보건복지부는 2024년 8월부터 4개 광역시·도¹⁷⁾에 전담 지원체계로서 ‘청년미래센터(가칭)’를 사회서비스원 또는 기업진흥원에 설치하여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전담 원스톱 창구를 두고 맞춤형 사례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바, 제정안의 목적 조문은 사업들이 추구하는 이념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7) 인천, 울산, 전북, 충북임.

<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 지원 주요 내용 >

- (가족돌봄청년) (발굴) 지역 내 중고교·병원과 상시협력체계 구축 (아픈가족) 의료·돌봄서비스 신청대
행·연계 (청년) 연 200만원 자기돌봄비*
- * 전담인력이 현금지원과 연계해 자기발전계획 함께 작성, 아픈 가족을 위한 복지·돌봄서
비스 외에도 교육장학금·금융·주거·법률·일자리 등 필요한 서비스 연계
- ※ 자기돌봄비: 밀착사례관리 대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선정(960명), 우리카드 先포인트
지급(자기돌봄계획에 따른 지급여부 월별 확인)
- (고립·은둔청년) (온라인 자기진단) 초기상담 후 고립·은둔 정도에 적합한 프로그램 제공
- * 자조모임, 심리상담 및 가족관계 회복, 공동생활, 소통기술 습득, 간단한 일경험 등

자료: 보건복지부

나. 정의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들의 정의조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 서영석의원안, 조승환의원안, 김성원의원안은 각각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위기청년, 취약청년을 정의하면서, 위기청년은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으로, 취약청년은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포함하는 8개 유형의 청년으로 구성하는바, 모든 개정안들은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소득, 부채 등 재산상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을 명시하고 있음.

서영석의원안	조승환의원안	김성원의원안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서영석의원안	조승환의원안	김성원의원안
	1. “<u>위기청년</u>”이란 <u>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u>을 말한다. 2. “청년”이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1. “청년”이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u>취약청년</u>”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u>그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부채 등 재산상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u>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¹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청년 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¹⁹⁾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년 및 부모 모두 외국인인 가정의 청년. 이 경우 청년의 출생지를 불문한다. 다. 부, 모 또는 본인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청년²⁰⁾
1. “<u>돌봄대상가족</u>”이란 고령, 장애, 질병, 정신질환 또는 약물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8촌 이내의 혈족을 말한다)을 말한다.	3. “<u>돌봄대상가족</u>”이란 고령, 장애, 질병, 정신질환 또는 약물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서영석의원안	조승환의원안	김성원의원안
2. “가족돌봄아동·청소년· <u>청년</u> ”이란 <u>돌봄대상가족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3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본인 및 돌봄대상가족의 소득·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사람</u> 을 말한다.	4. “가족돌봄청년”이란 <u>돌봄대상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청년으로서 본인 및 돌봄대상가족의 소득·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사람</u> 을 말한다.	라. <u>고령,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는 청년</u>
		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인 청년 ²¹⁾ 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제4호·제5호의 시설에서 퇴소한 청년 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년
	5. “ <u>고립·은둔청년</u> ”이란 <u>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스스로 회피하거나 제한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학업 수행이나 사회 활동이 곤란한 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u> 을 말한다.	아. <u>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서 6개월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학업수행이나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u>
②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이 「병역법」에 따른	② 가족돌봄청년이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서영석의원안	조승환의원안	김성원의원안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에는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까지를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으로 한다.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에는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까지를 가족돌봄청년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u>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u>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위기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u>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위기청년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u>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취약청년 자립지원등에 관하여 <u>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u>

18) 「장애인 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1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3. “정착지원시설”이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금품”이란 이 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빌려주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 라. 미혼자{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 다만, 김성원의원안에서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유형의 청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개별법에 따른 지원 체계와 비교하여 보다 보호를 두텁게 하는 법을 우선적으로는 따를 필요가 있어 보이며, 서영석의원안과 조승환의원안은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당사자들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여 대상자들에게 유리하게 법률이 적용되도록 명시하고 있음.

□ 한편, 서영석의원안에서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의 연령을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청년기본법」에서의 청년이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인 점과 일치시키기 위함으로 보임.

□ 참고로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²²⁾,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²³⁾, 「청년기본법」상 청년은 19세 이상 34세²⁴⁾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22)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3)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청소년복지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4)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하고 있으며,

「민법」에서 19세를 성년의 기준²⁵⁾으로 정하고 있음까지 고려할 때 세 제정안들은 광범위한 연령대를 보호대상으로 설정하면서도 모두 미성년자인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은바, 추후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더욱 강화된 지원 조치를 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아동·청소년·청년의 법률상 연령 범위 >

구분	「아동복지법」상의 아동 (보건복지부)	「청소년 기본법」상의 청소년 (여성가족부)	「청년기본법」상의 청년(국무조정실)
연령 범위	18세 미만	9세 이상 24세 이하	19세 이상 34세 이하

□ 지원 대상의 연령 설정 및 돌보아야 할 가족이 겪는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범위, 소득 수준 등은 대상자의 자격 및 재정투입 규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자립가능 연령, 연령별 맞춤 지원 정책의 효과성, 관련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연령과 관련해서는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의 연령이 34세 이하, 9세 이상 34세 이하, 14세 이상 39세 이하 등 다양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25)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 가족돌봄청년의 정의 관련 조례의 예시 >

	돌봄대상가족의 사유	가족의 범위	연령
서울특별시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	민법(제779조) ²⁶⁾ 에 따른 가족	9세 이상 34세 이하
부산광역시	고령, 장애, 정신·신체의 질병,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9세 이상 34세 이하
경기도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가족 구성원이 장애·질병·정신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	가족 구성원	34세 이하
강원특별자치시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약물 등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14세 이상 39세 이하
경상남도	고령, 장애, 정신·신체의 질병,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13세 이상 39세 이하
대전광역시	고령, 장애, 질병 등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9세 이상 24세 이하
김해시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장애·질병 등	가족구성원	9세 이상 24세 이하
여주시	고령 또는 장애, 질병 등	가족구성원	9세 이상 34세 이하
괴산군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장애·질병 등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9세 이상 24세 이하

* 자료: 보건복지부

□ 또한, 돌봄의 대상인 가족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돌봄 대상으로서의 ‘가족’에 대하여 서영석의원안은 ‘8촌 이내의 혈족’으로 하고 있으며, 조승환의원안 및 김성원의원안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하고 있으나, 가족 해체 또는 양육시설 퇴소 등의 사유로 친척·친구·지인 등과 생계를 같이 하다가 이들을 돌보게 되는 경우와 같은 다양한 가족 내지 동거인의 형태에 대하여도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범위가 넓어질수록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26)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돌봄형태의 동거가 외형상 나타날 위험도 있을 것임.

해외 사례를 보면, 호주나 일본(사이타마현) 등의 경우 친척이나 지인의 경우도 포함시키고 있음.

<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의 정의 관련 해외 사례 >

구분	영국	호주	일본(사이타마현)
돌봄대상가족	장애, 질병, 정신건강 또는 약물 등	장애, 신체·정신질환, 약물 등	고령, 신체·정신상의 장애 또는 질병
가족의 범위	가족, 친척	가족, 친척, 지인	친족, 친구, 지인
연령	18세 미만	25세 이하	18세 미만

* 자료: 보건복지부(가족 돌봄 청년 지원 대책 수립 방안), 국회입법조사처(해외 영 케어러 지원제도와 시사점)

□ 참고로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처에 따라 그 소관 법률에서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는 해당 부처의 보호 담당 대상이라도 가족돌봄이나 고립·은둔하고 있는 대상자는 제정안의 대상으로 전담하여야 하는지 법률들을 중복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때에 기준의 하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다른 법률에서는 명시적으로 가족돌봄 또는 고립·은둔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그 소관 부처가 대상 집단의 연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국무조정실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18세 미만의 연령 집단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소관인 「아동복지법」 하에서의 보호체계와 비교가 필요하고,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정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의 발달수준 및 양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합서비스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2.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정서 발달 교육 지원
3. 부모의 양육 지도
4. 그 밖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통합서비스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합서비스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서비스지원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과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둘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연령 집단에 대하여는 여성가족부 소관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하에서의 보호체계와 비교가 필요하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② 특별지원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다만,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 ③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7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내용 등) ① 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은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

1. 청소년이 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지원
2.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비용의 지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의 지원
4. 취업을 위한 지식·기술·기능 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비의 지원
5. 폭력이나 학대 등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의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의 지원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해당하며, 지원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금액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그 지원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은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8조(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기준) ①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하 “특별지원대상청소년”이라 한다)은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 이하인 청소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청소년 중에서 선정한다.

3.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4. 사회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 셋째,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연령 집단에 대하여는 국무조정실 소관인 「청년기본법」 하에서의 보호체계와 비교가 필요함.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2. 청년정책의 추진목표
3. 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4.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5. 청년정책에 관한 기능의 조정
6.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7.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에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여건 개선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기존의 법률들을 살펴볼 때에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기존 법률은 아동과 청소년 자체를 보호대상으로 보고 지원하는 체계인 반면, 제정안들은 아동과 청소년이 사실상 가장 노릇을 하는 가정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률과 제정안은 중복적인 적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다.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 각 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서영석의원안	조승환의원안	김성원의원안
제6조(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5조(위기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u>5년마다</u> 취약청년 자립지원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서영석의원안	조승환의원안	김성원의원안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 <u>기본계획</u> ”이라 한다)을 <u>5년마다</u> 수립하여야 한다.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 <u>기본계획</u> ”이라 한다)을 <u>5년마다</u>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u>기본계획</u>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8조에 따른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1. 위기청년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1. 취약청년 자립지원등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방안	2. 위기청년 조기 발견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방안	2. 취약청년 자립지원등에 관한 사업의 개발·운영 방안
3.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3. 위기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4.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운영	4. 위기청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운영	3. 취약청년 자립지원등에 관한 전달체계 구축
5.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	5. 위기청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	
6. 가족돌봄아동·청소년	6. 위기청년 지원을 위한	4. 취약청년 자립지원등을

서영석의원안	조승환의원안	김성원의원안
년·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전문인력 양성	위한 전문인력 양성
7.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	7. 위기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	5. 취약청년 자립지원등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
8. 그 밖에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위기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취약청년 자립지원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법」 제7조의 아동정책기본계획,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청년기본법」 제8조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청년기본법」 제8조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청년기본법」 제8조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기본계획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위기청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영석의원안	조승환의원안	김성원의원안
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 따라 취약청년 자립지원등에 관한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분석·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승환의원안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시에 지자체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초지자체장까지 포함할 경우 협의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임.
- 시행계획의 경우, 제정안에서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그 시행을 위한 계획으로 상정하고 있으나, 기본계획은 실제 지원대상의 사회진출과 생활에 도움을 주는 내용보다는 추상적 내용만을 담고 있으며, 오히려 제9조 또는 제10조부터 열거하는 구체적 지원 방안이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담고 있으므로 시행계획의 주된 내용은 이러한 구체적 지원방안 실천에 관한 것을 담되, 보조적으로 기본계획의 중점 추진 방향을 참조하는 방식이 적절할 수 있음.
- 한편, 다른 법률에서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나, 해당 정부부처의 장관이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있음을 참고하여 향후 제정법안에 대하여 논의할 때 이러한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을 것임.

「청소년 기본법」

제13조(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2.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3. 청소년육성에 관한 추진목표
4.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능의 조정
5. 청소년육성의 분야별 주요 시책
6.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7.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계획 수립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9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나 그 밖의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청년기본법」

제10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 국무총리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라. 실태조사

- 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서영석의원안	조승환의원안	김성원의원안
제8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현황 및 실태 파악,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u>3년마다</u>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청년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위기청년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u>3년마다</u> 위기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취약청년 자립지원등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약청년의 고용, 주거, 교육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u>3년마다</u>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서영석의원안	조승환의원안	김성원의원안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의 대상·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실태조사는 실제적으로도 지원 대상의 수가 어느 정도로 어떻게 존재하는지, 어떤 정책을 필요로 하고 기존의 사업들의 효과는 어떠한지 등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치로서 의미가 있을 것임.

□ 참고로, 아동종합실태조사(「아동복지법」), 노인실태조사(「노인복지법」), 장애인실태조사(「장애인복지법」), 발달장애인 실태조사(「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경우에도 제정안처럼 3년을 주기로 실시되고 있음.

< 각종 법률상 실태조사 현황 >

실태 조사명	근거 법률	주기
아동종합실태조사	「아동복지법」	3년
노인실태조사	「노인복지법」	3년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인복지법」	3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년

□ 다만, 실태조사를 실제로 실시하는 것은 시행령 등으로 정하는 기관에의 위탁을 통하여 행하여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정보제공 요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와 제공된 정보의 관리에 대한 규정이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임.

마. 정책심의위원회

- 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 대한 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또는 15명 이내의 당연직·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서영석의원안	조승환의원안	김성원의의원안
제9조(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정책심의위원회) ①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기청년정책심의위원회) ①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위기청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위원회) ① 취약청년의 자립지원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위기청년 지원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향	3.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4.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위기청년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취약청년 자립지원등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 선에 관한 사항
5. 관련 기관 간 협력체 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5. 관련 기관 간 협력체 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3. 취약청년 자립지원등과 관련된 기관 간 협력에

서영석의원안	조승환의원안	김성원의원안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u>당연직 위원</u>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u>위촉직 위원</u> :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 관련 단체의 장,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u>당연직 위원</u>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2. <u>위촉직 위원</u> : 위기청년 지원 관련 단체의 장이나 위기청년 지원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u>당연직 위원</u>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차관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2. <u>위촉직 위원</u> : 취약청년 자립지원등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등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필수적인 사항들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바람직한 방향성을 조언할 수 있는 기능을 할 것으로 보임.
-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는 행정부와 독립된 객관적인 의사 결정을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차관이 위촉하는 구조에서는 오히려 관련이 있는 타 부처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것이 기관 간 협조 등에서 유리할 수도 있다고 보임.
- 한편,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²⁷⁾의 취지를 고려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기보다 보건복지부 정책자문위원회 산하의 분과·전문위원회 형태로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2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바. 구체적 지원 정책

- 제정안에서는 지원대상자들에 대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제공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 사항으로서 가족돌봄수당, 가족돌봄서비스·상담·교육·직업체험 및 취업·건강관리 지원, 자립 지원, 주거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서영석의원안	조승환의원안	김성원의원안
제 10조(가족돌봄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하여 <u>가족돌봄에 필요한 수당</u>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 대상·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9조(가족돌봄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하여 <u>가족돌봄에 필요한 수당</u>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 대상·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1조(가족돌봄서비스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이 돌봄대상가족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u>돌봄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른 돌봄서비스의 종류, 지원 대상·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0조(가족돌봄서비스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청년이 돌봄대상가족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u>돌봄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른 돌봄서비스의 종류, 지원대상·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영석의원안	조승환의원안	김성원의원안
제12조(상담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u>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u>	제11조(상담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u>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u>	제13조(심리상담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청년과 취약청년 가족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하여 <u>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u>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 지원의 대상·기준,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의 대상·기준,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서비스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사회적 가족제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률, 취업, 경제 등의 분야에서 자립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자립지원상담자”라 한다)와 취약청년을 연결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회적 가족제도(이하 “사회적 가족제도”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자립지원상담자의 자격, 사회적 가족제도의 운영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영석의원안	조승환의원안	김성원의원안
제 13조(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이 생계와 가족돌봄으로 인하여 <u>학업을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지원의 대상·기준,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 12조(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년이 생계와 가족돌봄, 고립·은둔 등으로 인하여 <u>학업을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기준,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 14조(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u>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u>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제 13조(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u>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u>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위기청년의 직업체험 등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서영석의원안	조승환의원안	김성원의원안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의 직업교육 훈련의 대상·기준,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항의 직업교육 훈련의 대상·기준,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건강관리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u>질병의 예방·상담·치료, 영양·건강에 관한 교육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 지원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건강관리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년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u>질병의 예방·상담·치료, 영양·건강에 관한 교육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 지원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자립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의 자립에 필요한 <u>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u>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자립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년의 자립에 필요한 <u>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u>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위기청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취약청년 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u>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u> 2. 자립에 필요한 <u>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u> 3.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서영석의원안	조승환의원안	김성원의원안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기준,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기준,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주거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과 돌봄대상가족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u>임대주택의 공급 및 입주자격 부여, 임대보증금 지원, 주거시설의 설치·운영 등 주거에 필요한 지원을</u> 할 수 있다.	제16조(주거시설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가족돌봄청년과 돌봄대상가족이 거주할 주거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u>	제12조(청년자립준비주택 공급·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취약청년</u> 이 자립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u>청년자립준비주택(이하 “청년자립준비주택”이라 한다)을 공급·운영할 수 있다.</u>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청년자립준비주택을 공급·운영하는 경우 공급·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거 지원의 종류, 지원 대상·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거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청년자립준비주택의 공급·운영 시 취약청년의 유형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공급·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시설의 우선 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과 돌봄대상가족이 <u>공공의 아동·청소년 편의 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u> 하여야 한다.		

□ 제정안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가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 제공해야 할 각종 지원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그 지원 사항들이 기존 제도에 이미 존재하는 경우 시행규칙 등을 통하여 이들과 연계되어 더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가족돌봄아동청년에 지원 가능한 서비스(예시) >

구 분		지원 서비스(예시)
돌봄 부담 완화	전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등
	소득 기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생활도움 지원 등)
	위기	통합사례관리대상 의뢰,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긴급위기 가족지원 등
생계 부담 완화	경제	생계·교육·자활급여,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기초연금,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고용	근로·자녀장려금, 생활안정자금융자금,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국민취업지원제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융자사업
	긴급	긴급복지 지원제도, 긴급위기 가족지원
	주거	주거급여,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집수리 사업,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장기전세주택 공급,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기타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푸드마켓, 문화 바우처,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지원사업, 차상위 각종 감면, 민간 후원 연계
의료 부담 완화	전 대상	대사증후군 관리, 가사간병통합지원,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치매조기검진, 노안 개안수술비 지원,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등
	소득 기준	의료급여, 건강보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신청, 건강검진, 암검진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학습 지원	기타	두드림학교 및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대학생 튜터링 사업,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지원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

* 자료: 보건복지부(가족 돌봄 청년(영 케어러) 지원 대책 수립 방안, 2022.2.14.)

< 고립·은둔청년에 지원 가능한 서비스(예시) >

구 분	지원 서비스(예시)
자기회복	○ 자기이해 워크숍, 심리상담(개인, 집단, 방문, 온라인상담 등) 등 마음건강 회복 프로그램
사회관계	○ 영역별 프로그램 참여(신체/예술/놀이활동/3끼 식사 등), 사회관계 형성 프로그램 참여(독서/요리/가드닝 모임등), 자조모임 등을 통한 관계 형성 지원
일경험	○ 자기계발 및 진로 탐색프로그램, 취업 지원, 청년 도전지원사업 연계 등
공동생활 (은둔청년 특화)	○ 시간 및 일상생활 관리 프로그램(수면 및 위생 관리, 정리정돈, 식습관 개선 지원 등)
가족지원	○ 청년층 이해·소통 교육 제공, 가족심리상담 프로그램, 고립·은둔청년 가족 자조모임 지원
서포터즈 활동 지원	○ 고립·은둔청년 경험 청년(탈 고립·은둔청년)으로 구성된 서포터즈를 기반으로 고립·은둔청년 파악 및 1:1 멘토/멘티 활동 운영·관리

* 자료: 보건복지부

- 다만, 제정안에서 예정하는 여러 지원 방안의 제도 도입에 따라 상당 규모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자체에서는 임의규정이라는 이유로 시행을 소극적으로 할 가능성도 있음. 따라서 기본계획에서 위의 구체적 지원 방안의 시행을 위한 방안이 담겨야 할 것이며, 시행계획에도 지원 방안의 집행에 대한 내용이 담기도록 법에서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참고로, 보건복지부가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보편적인 지원 사항은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사업,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등임.

< 지자체의 보편적 지원 사항 >

구 분	지자체 조례별 공통 지원 사항
돌봄부담완화	가족돌봄청(소)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정서적 지지	가족돌봄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사업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문화·체육활동	가족돌봄청(소)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 자료: 보건복지부

□ 그 외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 스코틀랜드, 호주, 뉴질랜드에서 돌봄노동에 대한 수당의 형태로 지급되고 있으며²⁸⁾ 스코틀랜드의 경우, 주당 16시간 이상(미만도 일정부분 인정) 가족·친구·이웃을 돌보는 만 16세~만 18세 이하의 영 케어러에게 1년에 1회 308.15파운드(약 50만원)의 수당(Young Carer Grant)을 지원하고 있고, 호주는 12~25세 영 케어러를 대상으로 3,000호주달러(약 260만원)의 학비보조 프로그램(The Young Carer Bursary Program)을 지원 중임²⁹⁾.

28) 돌봄노동수당 또는 간병인 수당이라 불리며 지급 대상이 Young Carer에 한정되지는 않음.

29) 이봉조, ‘영국의 영 케어러 지원 정책과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리뷰(2022년 겨울 23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12. 31.

허민숙, ‘해외 영 케어러 지원 제도와 시사점’, NARS 현안분석, 국회입법조사처, 2022. 2. 22.

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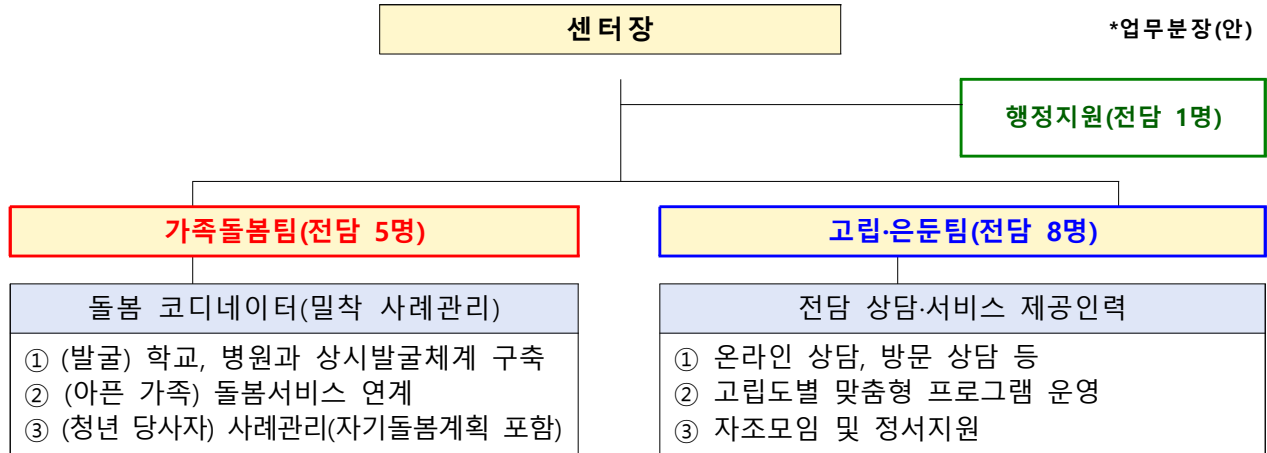
- 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원센터의 업무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협력 등을 규정함(안 제19조).

서영석의원안	조승환의원안	김성원의원안
제 19조(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하여 <u>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u> 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 17조(위기청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u>위기청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u> 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 10조(청년자립준비학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약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준비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u>청년자립준비학교(이하 “청년자립준비학교”라 한다)</u> 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청년자립준비학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의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	1.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위기청년 지원	
2.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2. 위기청년 조기 발굴 및 지역사회 지원과의 연계·협력	
3.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위기청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4. 위기청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서영석의원안	조승환의원안	김성원의원안
5. 가족돌봄아동·청소년 · 청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위기청년 지원 우수사 례의 발굴 및 확산	
6. 가족돌봄아동·청소년 · 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6. 위기청년에 대한 사회 적 인식 개선	
		1. 법률, 주거, 취업 등의 분야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
		2. 제11조에 따른 사회적 가족제도의 운영
7. 그 밖에 가족돌봄아동 · 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위기청년 지원 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그 밖에 취약청년의 자립 준비 역량 강화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 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 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청년자립준비학교의 설치·운영을 관련 전문인 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 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 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제3항에 따라 위탁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 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 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제3항에 따라 위탁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 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 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제3항에 따라 청년자립준비 학교의 설치·운영을 위탁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 의 설치·운영 기준, 종사 자의 자격,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 의 설치·운영 기준, 종사 자의 자격,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⑤ 청년자립준비학교의 설 치·운영기준, 위탁 및 위 탁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원센터는 실질적으로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설치·운영 근거를 법률에서 마련하는 일은 안정적인 서비스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을 보다 전문적·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임. 또한 대외적으로도 지역사회 자원 간 긴밀한 연계·협력,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국가와 지자체가 모두 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역할의 분담에 관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지자체도 광역과 기초 지자체 사이의 역할 분담에 관한 규정의 보완되어야 할 것임.
- 한편, 재정상황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지원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이미 마련되어 운영 중인 경우, 동 기관에서 지원센터 업무를 행하는 것으로 간주하거나 지원센터로 지정하는 방안도 논의해 볼 여지가 있는바, 현재 보건복지부가 2024년 8월부터 인천, 울산, 전북, 충북 4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전담 지원체계로서 ‘청년미래센터(가칭)’는 사회서비스원 또는 기업진흥원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청년미래센터(가칭) 의 지원 체계>



자료: 보건복지부

□ 그 밖에, 김성원의원안에서는 서영석의원안과 조승환의원안에서의 청년지원센터와 유사한 취지로 청년자립준비학교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있는데, 「초·중등교육법」³⁰⁾에 따르면 학교설립인가 또는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그 시설이 폐쇄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시설의 이름을 변경하거나 「초·중등교육법」의 적용 예외를 규정하여야 할 것임.

30) 「초·중등교육법」

제65조(학교 등의 폐쇄)

② 관할청은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50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게 그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아. 지원센터에의 연계

- 서영석의원안에서는 각급 학교의 장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의료기관의 장 등이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을 발견한 경우에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도록 규정함.

서영석의원안	조승환의원안	김성원의원안
제20조(지원센터에의 연계)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장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u>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청소년·청년에게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u>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u>지원이 필요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을 발견한 경우에는</u> 해당 아동·청소년·청년에게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u>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u>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	-	-

서영석의원안	조승환의원안	김성원의원안
담복지센터의 장,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센터의 장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의 장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 프로그램의 안내 및 지원센터의 연계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이는 잠재적 지원 대상자들이 가족돌봄청년 지원 체계의 존재를 몰라서 복지 정책의 수혜로부터 누락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취약 가구 중에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을 발굴하고, 중증 질환 가구, 재난적 의료비 수급 가구, 의료급여 수급 가구 등 데이터

를 분석하여 제정안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청년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필요도 있을 것임.

- 이와 같은 긍정적 효과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에 나머지 두 제정안의 경우에도 유사한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임.

자.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김성원의원안에서는 취약청년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 통합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약청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서영석의원안	조승환의원안	김성원의원안
-	-	제16조(취약청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u>취약청년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 통합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약청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u>

서영석의원안	조승환의원안	김성원의원안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통합정보시스템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관계 전산망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유사한 입법례로 「청소년복지 지원법」 31)에 따른 위기청소년통합

3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2조의2(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 통합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 수집·보유·이용·제공·연계할 수 있다.

1. ~ 16. (생략)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수집·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의 효과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하는

지원정보시스템을 들 수 있는데, 해당 시스템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필요시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차. 전담공무원

- 제정안에서는 시·도 및 시·군·구에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복지 전담공무원을 두도록 규정함.

민간단체 및 기관과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연계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단체와 기관은 연계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통합정보시스템이 보유하는 자료·정보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이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 통합정보시스템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관계 전산망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⑧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⑨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 또는 정보를 취득하여 관리·이용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자료·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그 밖에 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영석의원안	조승환의원안	김성원의원안
제21조(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복지 전담공무원) ①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복지 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18조(위기청년 복지 전담공무원) ① 위기청년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u>위기청년 복지 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둔다.</u>	제17조(전담부서의 설치 및 인력의 배치)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약청년의 자립지원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u>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u> 할 수 있다.
②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전담공무원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상담 및 보호조치,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등 지역 단위에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전담공무원은 위기청년에 대한 상담 및 보호조치,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등 지역 단위에서 위기청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서영석의원안	조승환의원안	김성원의원안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전담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담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⑤ 관계 행정기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복지단체(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전담공무원 또는 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인력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 위기청년 복지단체(위기청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전담공무원 또는 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인력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2조(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위기청년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위기청년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전담공무원을 두게 되면, 해당 공무원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복지 업무에만 몰두할 수 있게 되므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서비스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³²⁾.
- 다만, 제정안과 같이 전담공무원을 둘 경우에 실무적인 측면에 있어서 기존의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전담공무원³³⁾,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사회복지전담공무원³⁴⁾과의 관계 설정 및 업무 조정 필요성은 있어 보임.

32) 추가적으로, 전담공무원을 공무원 신분으로 돌지, 또는 상기 전술된 전담기관이 공공기관인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담기관 소속 전담인력 등으로 돌지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33) 「아동복지법」

제13조(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① 아동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전담공무원은 아동에 대한 상담 및 보호조치,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확인 및 지도·감독 등 지역 단위에서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담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⑤ 관계 행정기관,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단체(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전담공무원 또는 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인력(이하 “민간전문인력”이라 한다)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3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읍·면·동 또는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관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업무 중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과 지도, 생활실태의 조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 업무를 담당한다.

④ 국가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카. 비밀유지 의무 및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벌칙 등

- 제정안에서는 업무에 있어서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비밀을 이용 또는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에 처하고, 지원센터가 아니면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함.

서영석의원안	조승환의원안	김성원의원안
제23조(비밀유지 의무) 가족 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u>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u> 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비밀유지 의무) 위기청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u>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u> 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비밀누설의 금지) 취약청년 자립지원등, 취약청년에 대한 상담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u>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u> 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원센터가 아니면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3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원센터가 아니면 위기청년 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7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은 <u>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u> 에 처한다.	제24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자는 <u>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u> 에 처한다.	제21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한 사람은 <u>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u> 에 처한다.
제28조(과태료) ① 제26조를 위반하여 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	제25조(과태료) ① 제23조를 위반하여 위기청년 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서영석의원안	조승환의원안	김성원의원안
한 자에게는 <u>300만원 이하의 과태료</u> 를 부과한다.	을 사용한 자에게는 <u>300만원 이하의 과태료</u> 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 다만,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추가하여 실태조사에 관여한 사람도 정보누설에 대한 금지와 처벌 규정이 보완되어야 할 것임.

□ 유사한 입법례로서 「청소년복지 지원법」³⁵⁾을 들 수 있고, 해당 법률에서는 비밀 누설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7조(비밀 누설의 금지) 청소년상담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이하 “청소년복지지원기관”이라 한다)나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이 아니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또는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3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

제4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8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문 의 처
02)6788-5498